

Yeosu Web Contents

2024년 05월 04일 00시 40분



목차

목차	2
민원사무편람 및 서식 - 전체	3
관리대상기기등(신고서, 변경신고서)	3


관리대상기기등(신고서, 변경신고서)

2022.03.25 09:04 조회수 516 등록자 오주연

✓ 민원사무명	관리대상기기등(신고서, 변경신고서)
✓ 민원내용	관리대상기기등(신고서, 변경신고서)
✓ 관계법령	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제24조의2
✓ 구비서류	1. 신고할 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2. 신고증명서(변경신고의 경우만 제출합니다.)
✓ 처리부서	기후생태과
✓ 협의부서	
✓ 접수	
✓ 수수료	없음
✓ 처리기간	7일
✓ 기타사항	
✓ 흐름도	
✓ 기타참고사항	2008. 1. 27. 이후에 제조된 것으로 절연유의 pcbs 함유량이 0.05mg/l 미만인 관리대상기기는 신고 대상이 아님

첨부파일

[전체\(Zip\)다운로드](#)

 [별지 제9호서식] 관리대상기기등 신고증명서(잔류성오염물질 관리법 시행규칙).hwp (2128 hit/ 16.5 KB) ↓

[미리보기](#)

목록

COPYRIGHT © YEOSU-CITY. ALL RIGHTS RESERVED.

(<http://www.yeosu.go.kr>)

Yeosu Web Contents

